

2023학년도 상반기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

I 실시 근거

1.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공모 교장의 임용·평가 등)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4. 2021.3.1.자 교장공모제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교원인사과-8103(2020.4.27.)]
 5. 2023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교원정책과-7529 (2022.10.14.)]
- ※ 기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적용

II 실시 학교 지정

1. 교장공모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의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직,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인해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공립의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2. 교장공모 실시학교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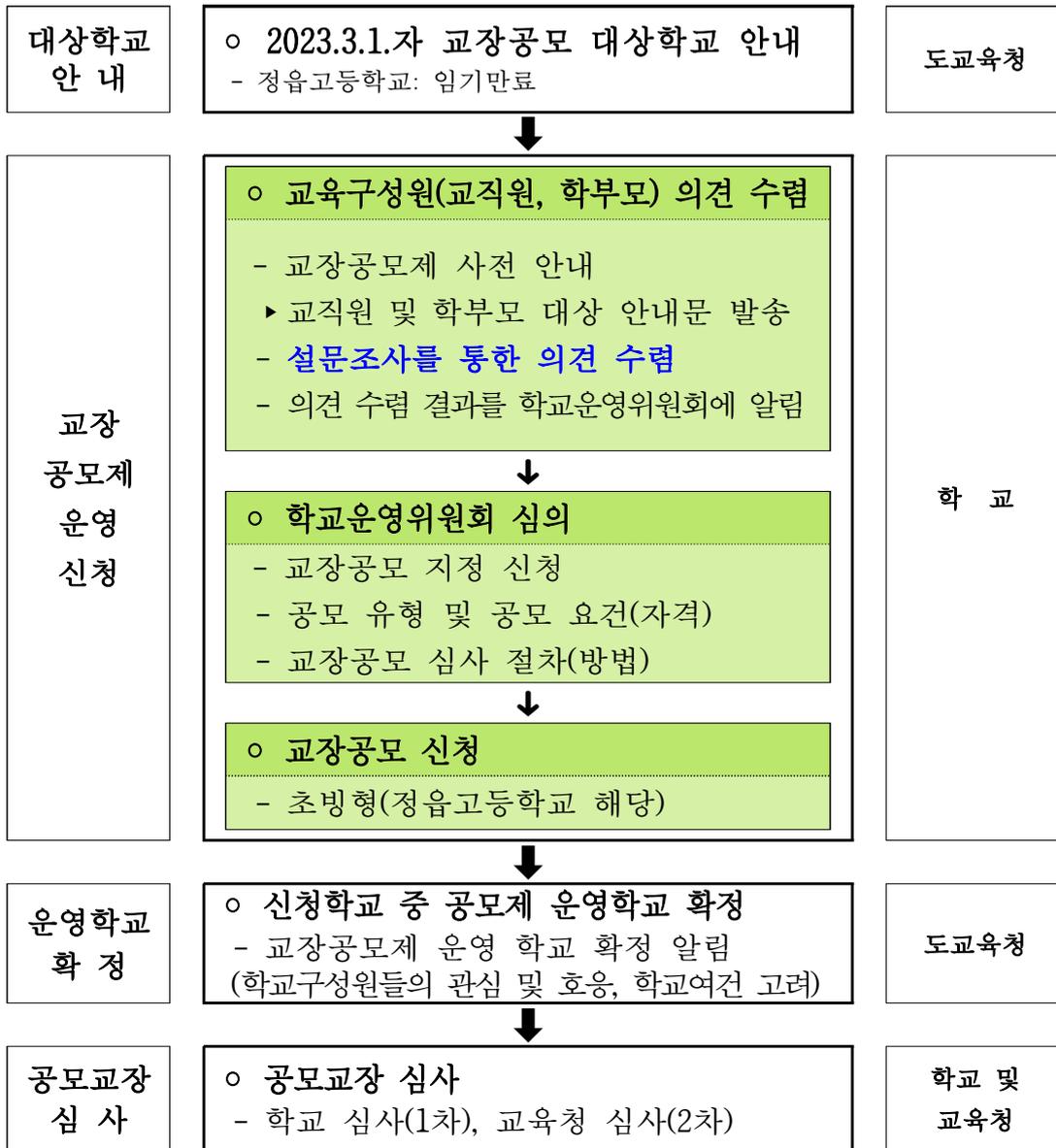
가. 지정 규모 : 교장결원(정년퇴직, 중임만료)이 발생하는 학교 수의 2/3 범위 내에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수 지정

학교급	교장결원 학교 수 (정년퇴직, 중임만료 등)	교장공모 실시 가능 학교 수	비고
중등	21교	14교	

나. 학기별로 교장 결원 수에 따른 공모 학교를 지정하며, 당해학기 공모학교를 지정 철회(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 수 만큼 이월하여 다음 학기에 타 학교를 지정, 공모 추진

다. 공모 대상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 소외·낙후지역

학교, 공모교장 희망·선호학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 등을 우선 지정
 라. 지정 절차



※ 지정 절차에 따른 유의사항

-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시 반드시 공모교장 유형별 자격, 심사 절차 및 방법 등 교장공모제에 대한 기본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설문조사 실시
-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학교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교장 유형 및 자격요건, **1차 심사방법을 심의하여 결정**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이 공모교장을 임용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1항, 제2항)

III 교장공모 유형별 자격 기준 및 지원 제한

1. 초빙형

가. 신청 가능 학교: 일반학교

(결원 예정 학교 중에서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수목적고와 특성화 중·고등학교 및 예·체능계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나.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1항)

다. 임용예정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자를 포함

2. 교장공모 지원 제한

-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제한(임용예정일 기준)
- 다음의 경우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자도 지원 가능
 -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승진 임용의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
 - ※전직도 승진임용의 제한 규정 적용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의 제한요건 해당자
-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현임교(기관)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교감·교사·교육전문직원은 교장공모 지원 불가 (교육공무원법 제21조)
-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 다만, 교원 4대 비위자(금품·향응수수, 성적 조작, 성범죄, 학생상습폭행) 및 그에 준하는 비위징계 전력자는 징계기록 말소여부와 관계없이 응시 불가
- 2023.1.1.이후 음주운전(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의결 요구·처분을 받은 사람
- 초등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중등교장 자격증 소지자간의 학교급별 교차 지원 금지
- 현임학교의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다만, 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의 교장은 당해 학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현임 수석교사는 교장공모 지원 불가
 -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에 의거 수석교사는 임기중에 교(원)장, 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 특정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해당 학교 공모 지원 제한

- 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원은 관내 초·중학교 공모지원 불가(고등학교 지원 가능)
- 현임교 학교운영위원(교원위원 제외)은 교장공모 지원 불가
(다만, 기 운영위원중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사임 후 2년 경과한 자는 지원 가능)
- 현 재직교 지원은 원칙적 금지
다만, 현임교 재직교사(혁신학교인 자율학교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현임교 2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 한함)의 지원 가능 여부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여부에 따름.
승인결과는 추후 안내 예정

IV 공모교장 임용 절차

1. 임용 절차

❖ 교장공모 시행 안내(공모교장 임용권자)

-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장공모제 신청(학교)
- 교장공모 실시학교 지정(공모교장 임용권자)
- 교장공모 공고[학교, 교육청]
- 공모교장 지원자 접수(학교)
- 1차 심사(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 2차 심사[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 단수 임용추천(공모교장 임용권자) ⇒ 임용제청(교육부 장관)
- 공모교장 임명(대통령)

2. 교장공모 대상학교 안내

- 대상학교: 교장의 정년퇴직, 임기만료, 의원면직, 순환전보 등의 사유로 학교장 후임보충이 필요한 학교

3. 교장공모제 신청(학교)

가.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1) 학부모, 교직원에게 교장공모제에 대한 사전 안내

2) 교장공모 대상학교는 학교 구성원(교직원·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공모제 신청

※ 설문조사 항목: 교장공모제 희망 여부, 공모 유형, 공모교장 요건, 심사방법 등

나. 교장공모제 신청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1)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

2) 심사방법[(1차 심사방법) 참고], 공모 유형별 자격기준, 공모교장 요건 등

※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여 심의

4. 교장공모 실시학교 지정(공모교장 임용권자)

가. 학교여건, 교육여건, 학부모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교장공모 실시학교 지정

나. 신청학교가 많을 때에는, 도서·벽지·농산어촌지역, 소외·낙후지역학교, 공모 선호학교, 정책적 배려 학교, 자율학교, 지역별·학교급별 안배 등을 고려 지정함

다. 공모제 정착 지원 방안 : 당해 학교 배정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교사 초빙권 부여

라. 공모제(초빙형)의 공모 범위는 전라북도로 함

5. 교장공모 공고[학교, 교육청] 및 지원자 접수

가. 공고 방법

- 공고기간(재공고 포함)은 총 20일 이내로 함 ※ 초빙형 공고 일정에 따라 진행
- 학교장은 공고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기 전(재공고 포함)까지 지원자 접수를 마감
 -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일 전일까지 심사위원에게 비공개
- 공고문에는 해당학교의 지역여건, 학교특성, 공모교장의 필요 역량, 심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공모 요건이 명시되어야 함
- 공고문에는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운영계획서가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됨을 명시[특정 단체 또는 특정 인사와의 관계를 기재 시, 감점기준 강화(예: 만점의 10% 이상)]
 -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운영계획서는 익명화하여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2차 심사일까지 공지(다만, 학교운영계획서는 1차 심사당일 원본으로 교체하여 2차 심사일까지 공지)
 - 지원자로부터 자료 공개 동의서 받기

나. 지원자 접수

- 1) 공모교장을 지원하는 자는 해당 학교에 개별적으로 서류 제출
- 2) 지원자가 1명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총 공고기간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1·2차 공모 결과 지원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제 절차를 거친 후 단수 임용추천 가능. 다만 지원자가 1인인 경우 적격 여부 엄격히 심사
- 3) 1인 2개교 지원할 수 없음

다. 공모 지정 철회(취소) 등

- 1) 교장 공모 결과(재공고 포함) 지원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심사 점수 85%미만) 당해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거나 다음 학기에 공모할 수 있음
- 2) 공모 학교 지정을 철회(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수 만큼 이월하여 다음 학기에 타 학교를 지정하여 공모할 수 있음
- 3) 다만, 학교가 교장공모를 계속 원하는 경우 교육청은 공모 지정을 철회하지 않고 다음 학기에 공모할 수 있도록 그 동안 교장 직무대리를 운영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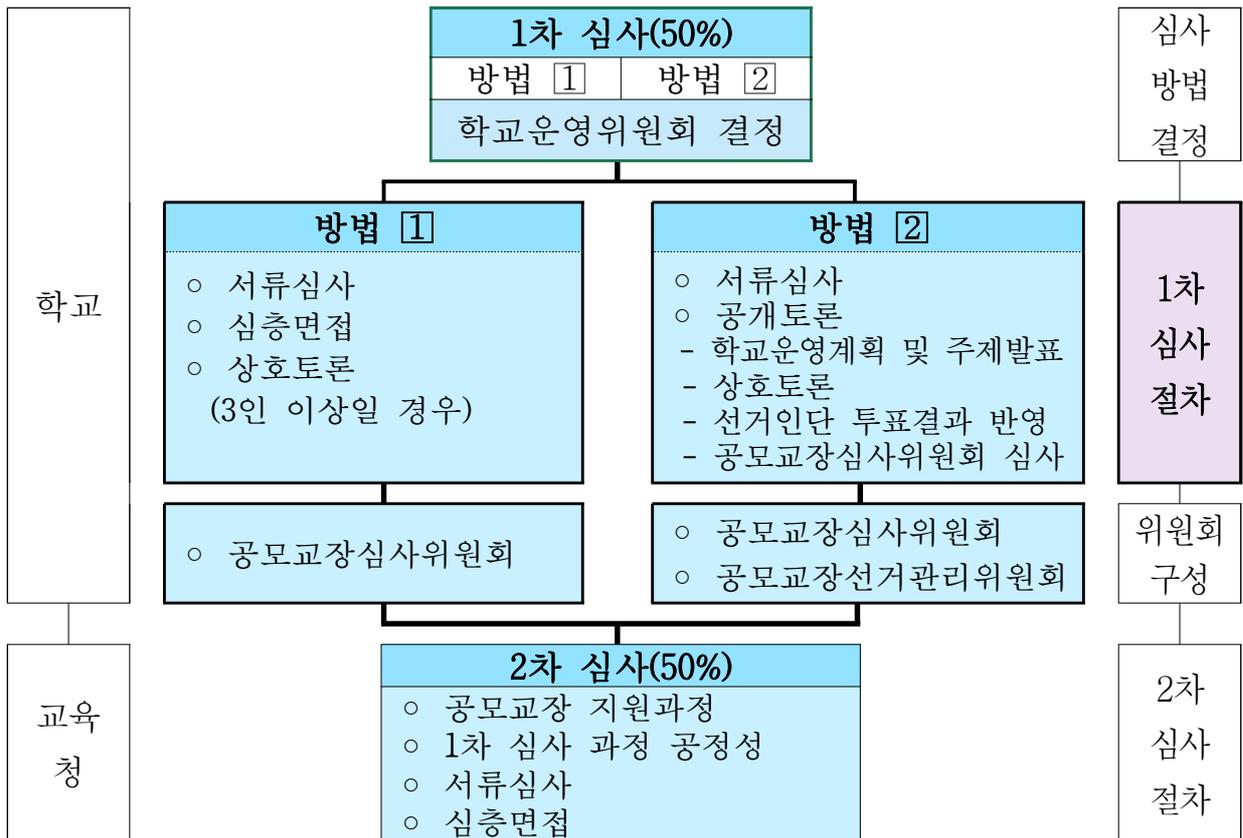
V

공모교장 심사 및 추천

※ 1차·2차 심사 실시 전 확인 사항

- ① ‘교장공모 지원 제한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 진행
- ② 지원자에게 심사기준, 진행절차 및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을 사전 안내
- ③ 1차, 2차 심사 시 교원, 학부모, 교원단체, 지역인사가 참관할 수 있도록 공지
- ④ 심사위원간 과도한 점수 편차에 따라 소수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준 지원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점수부여의 범위 및 급간, 순위 산출 방법 등을 사전에 조정
- ⑤ 특정 심사 방법만으로 탈락자를 우선 선정하는 등 단계적 심사 금지
- ⑥ 교장공모제(초빙형)취지에 상반되는 항목에 대한 가점 부여는 금지
- ⑦ 심사위원의 평가점 중 최고점과 최하점 각 1개씩을 제외하고 합산한 후 합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평균 산출
- ⑧ 1차 심사의 총합계 점수가 만점의 85% 미만인 경우 탈락
(최종 합계에서 85% 이상 득점자 중 3명 추천)
- ⑨ 1차 심사 진행 순서(방법 ①) : 서류심사 → 심층면접 → 상호토론으로 운영하되, 상호토론은 지원자가 3명 이상인 경우 1차 심사에서만 진행
- ⑩ 1차 심사 진행 순서(방법 ②) : 서류심사 → 공개토론(주제발표, 상호토론, 선거인단 투표)
- ⑪ 심사집계는 심사위원이 모두 참석한 곳에서 바로 집계하여 결과를 확인하되 최종심사 결과 발표 까지 비공개 유지(최종 집계 시까지 심사위원의 심사장 이탈 금지)

1. 심사 절차



※ 방법 ②를 선택하는 경우 공모교장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 심사 시 지원자 및 참관자가 자기소개서 및 실적자료를 볼 수 있도록 면접장 외부 장소 (복도 또는 별도의 실)에 비치 후 참관 안내

2.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가. 구성원칙

- 1) 심사위원회는 지원자 접수가 종료된 후 구성하되, 심사 완료 후 명단 공개
- 2)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 후, 익명 처리된 학교운영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
- 3) 심사위원 심사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위촉하고, 위촉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함

※ 심사위원 위촉 제한 대상

- . 지원자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 지원자를 직접 가르친 은사
- . 지원자에게 직접 배운 제자
- . 지원자에게 직접 배운 제자의 학부모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 학교의 경우 지원자가 학급담임인 학부모에 한해서 제외)
- . 지원자가 공모학교 동문일 경우 그 학교 동문 출신 제한
- . 기타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위원 유의 사항

- .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서약서를 제출
- . 서약서에 위배되는 자이거나 행위를 한 경우 해촉하고 심사행위를 무효화
- . 지원자 임용 전 심사위원의 서약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해 심사위원의 심사행위를 무효화하고 차후 절차 진행에 관하여 교육감이 결정
- . 후보자의 임용 후 심사위원의 서약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후보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사실이 임용된 교장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나.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구분		내용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인사 등 위원별 인원을 사전에 결정
위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학부모 및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10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 구성 비율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50%)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중에서 위촉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40%) 교직원 전체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교원(교장 및 공모제 담당 교원 제외) 중에서 위촉 교직원 전체회의 대상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공모교장 지원자 접수 종료 후 입후보자 없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고, 다득표자 순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선정된 교원에게 별도 통보. 다만, 선정된 교원이 심사위원 수행을 거절할 경우 후순위자 선정
	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30%) 해당 학교의 학부모, 교원이 아니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해당 학교의 졸업생, 교육 관련 전문가, 그 밖에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사람 중에서 위촉
구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위원 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사람은 50% 이하가 되도록 구성 기타 심사위원 선정 기준 및 선발 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특히,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심의 철저
역할	방법 ①	방법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심사, 심층면접, 상호토론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심사, 공개토론 심사, 선거인단 투표결과 반영
심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소개서, 학교운영계획서 심층면접 상호토론(지원자가 3인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소개서, 학교운영계획서 공개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운영계획 및 주제발표, 상호토론 (주제발표는 학교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 선거인단 참관 후 투표 실시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참관 후 심사 선거인단 투표결과를 심사결과에 반영하여 최종 점수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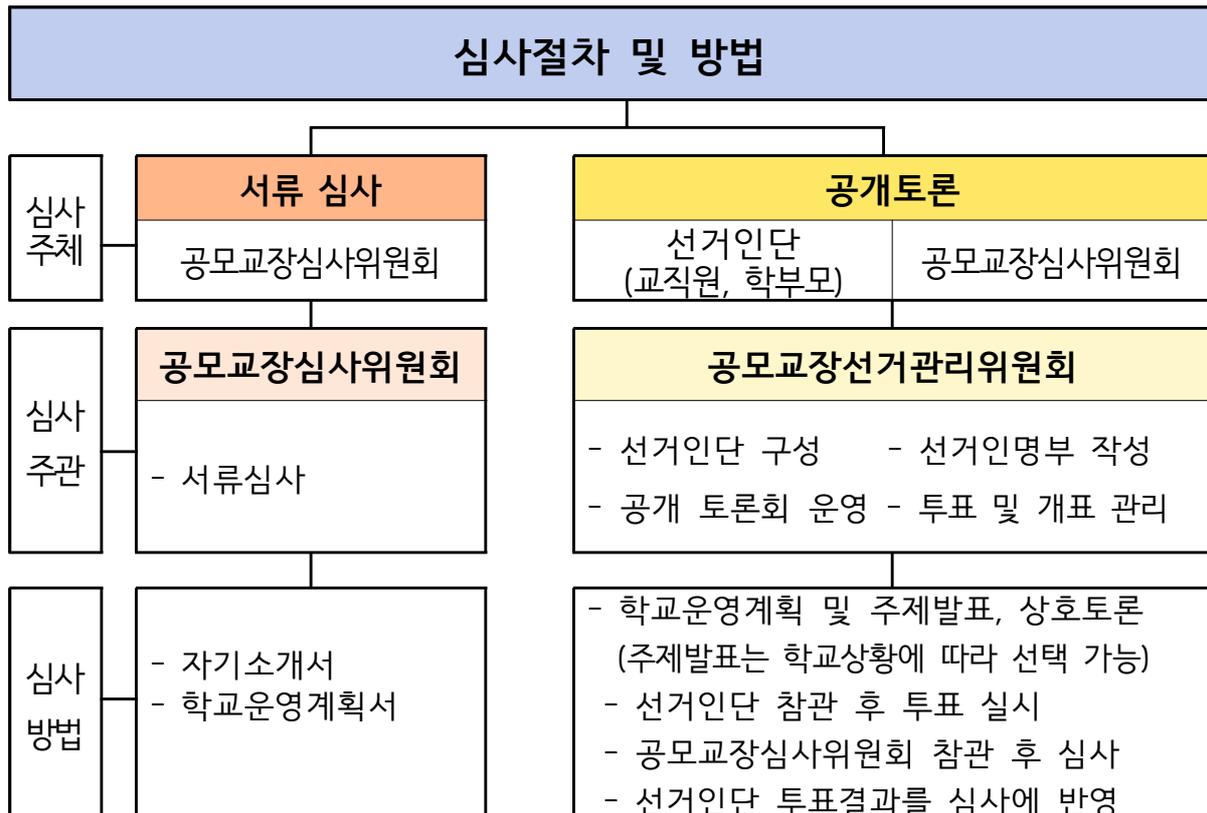
다.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구분	내용
주관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위원 수	· 7명 이상으로 구성 ※ 외부위원(학부모 ·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등)를 50% 이상으로 하되, 기타 위원들의 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 ※ 외부위원이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하며, 전직 교육공무원의 위촉은 최소화
구성 방법	· 평가의 전문성을 가진 인사로 구성 · 학교단위 1차 심사위원을 2차 심사위원으로 위촉 금지 (사전에 확인 후 위촉)

※ 임용 후보자가 공모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
 행위를 무효화 하고 교육감 추천 철회 또는 장관 임용제청 거부

3. 심사 방법 ②

가. 심사 절차 및 방법



나. 공모교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구분		내용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인사 등 위원별 인원을 사전에 결정 ※ 학교상황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교장선거관리위원회 역할 수행 가능
위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학부모 및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 구성 비율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50%)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중에서 위촉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40%) 교직원 전체 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교원(교장, 공모제 담당 교원, 공모교장심사위원 제외) 중에서 위촉 · 교직원 전체 회의 대상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공모교장 지원자 접수 종료 후 입후보자 없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고, 다득표자 순으로 위원을 선정하여 선정된 교원에게 별도 통보. 다만, 선정된 교원이 심사위원 수행을 거절할 경우 후순위자 선정
	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0%) 해당 학교의 학부모, 교원이 아니면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교장 선거 추진 업무 전반 · 선거인단 구성 및 선거인명부 작성 · 공개토론회 운영 · 투표 및 개표 관리 ※ 공개토론 및 선거인단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

다. 선거인단 구성 및 득표 반영률

구분		내용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교장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 ※ 선거인 명부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제외(중복 참여할 수 없음)
구성 (득표 반영률)	교직원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교직원으로 명부 작성 · 교직원의 범위는 현재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정 (휴직, 정직, 직위해제, 파견 중인 사람 등 제외) · 교직원에 교육공무직원 포함(포함 범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기간제 교원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참여 ※ 공개토론회 불참 시 투표할 수 없음

	<p>학부모 (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학부모 대상으로 공개토론회 참석 및 직접 투표 가능한 자로 희망서를 받아 명부 작성 ▪ 학부모 투표권은 반드시 1가구당 1표 ▪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및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론회 개최 안내 및 희망서 접수 <p>※ 공개토론회 불참 시 투표할 수 없음</p>
	<p>득표수에 따른 점수 반영 (별도 예시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 주체별 전체 유효 득표수를 100%로 하여, 각 선거인단의 투표결과 반영 점수에 따라 점수 부여 <p>(교직원 득표수 점수 반영) 교직원 득표수/교직원 투표참여 인원×교직원 선거인단 투표결과 반영 점수</p> <p>(학부모 득표수 점수 반영) 학부모 득표수/학부모 투표참여 인원×학부모 선거인단 투표결과 반영 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득표수에 따른 점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산출 ▪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득표수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1차 심사에 반영하여 최종점수 산출
	<p>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은 학생회 대표로 구성되는 대의원회 등으로 참여인단을 구성하여 공개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음. 다만, 투표권은 없음 ▪ 교직원이면서 학부모인 경우 교직원으로 참여 ▪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이 중복(심사와 투표)하여 참여할 수 없음

라. 공개토론회

- 1) 공개 토론회 실시 횟수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되 1회 이상 실시
- 2) 공개 토론회 이외의 사전 선거 운동 금지
- 3) 학교운영계획 발표, 주제에 대한 발표, 상호토론 등을 포함하는 공개토론회 운영을 권장(학교운영계획 발표 및 상호토론은 반드시 실시)

【공개토론회 과정 예시】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자 제출 서류 공개	- 자기소개서 및 학교운영계획서	-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교운영계획 발표	- 지원자별 10분 내외 학교운영계획 발표	- 필수사항
주제 발표	- 사전에 출제된 2개 주제 문항에 대하여 발표 전 10분간 답변 자료 준비 후, 6분 내외 발표	- 선택사항
상호 토론	<p>[방법 예시]</p> <p>(방법 ①) 사전 출제된 토론주제를 제시하여 지원자 간 상호토론</p> <p>(방법 ②) 사전 출제된 문항으로 각 지원자에게 질의하고 지원자별 응답, 추가 질문 및 응답</p> <p>(방법 ③) 학교운영계획 및 주제발표 내용에 대해 지원자 간 상호토론</p> <p>※ 상호토론 방법은 학교에서 정하며, 지원자가 1인일 경우 질의응답으로 상호토론 대신할 수 있음</p>	- 필수사항
질의 응답	<p>- 토론회 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p> <p>- 학생 참여인단은 투표권은 없으나 질의에 참여할 수 있음</p>	- 선택사항

4) 투표 실시

가) 지원자가 1인일 경우 찬반 투표 실시

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1가구 1인)에 한해 1인 1표

4. 공모교장 임용후보자 추천절차

가. 1차 심사 및 추천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 후 교육청으로 추천

- 1) 1차 심사 대상자 명단 확보 후 교장공모 지원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및 심사
- 2) 1차 심사 시 지원자의 경력, 주요활동,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도력, 전문성 등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심층면접, 상호토론을 토대로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지원자별 학교운영계획 등에 대한 전체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되, 실시 전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특정 주체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평판도 조사, 점수 평가 등을 실시하여 공모교장 임용후보자 심사 선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됨
- 지원자가 2명 이하일 경우, 심사 결과 부적격(85% 미만 득점 등)으로 판단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2차 심사대상자로 추천(모든 심사는 정상적으로 진행)

- 3) 1차 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순위를 명기하여 **3배수를 2차 심사대상자로** 추천
- 1차 심사결과 총점의 85% 이상을 득점한 지원자가 3배수 미만일 경우, 모두 2차 심사대상자로 추천

나. 2차 심사 및 추천 :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 후 교육감에게 추천

- 1) 서류심사, 심층면접을 통한 심층심사 후, 공모교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 및 학교 운영 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순위를 정하고, 이 중 상위 순위에 있는 3명의 순위를 명기하여 학교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
- ※ 학교 심사 결과 50%, 교육청 심사 결과 50% 반영하여 합산함
- 2차 심사 시 공모교장 지원 과정 및 1차 심사과정 공정성 등에 대한 심사도 병행
 - 심사결과 후보자 모두 공모교장 자격에 미달한다고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교육감은 공모학교 지정 철회

다. 최종 임용제청 추천 : 교육감이 선정 후 교육부로 추천

- 1) 교육감은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추천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1명을 선정하여 임용결격사유 여부를 확인 후 교육부장관에게 임용 추천
- 교육감은 1차·2차 심사결과 지원자가 일정 점수(85% 수준)를 얻지 못하여 적격자가 없으면 공모학교 지정 철회하고 임명으로 전환
 - 교육감이 교육청 심사에서 추천된 순위자 중 1순위자가 아닌 자를 최종 1명으로 선정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요청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
 - 교육부 장관에게 임용제청 추천 직전에 1순위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후순위자 1명을 임용 추천하되, 상기와 동일한 경우 해당학교 교장공모 지정 철회
- 2) 공모교장 선발과정에서 물의나 공모 서류 표절,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교육감은 학교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공모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공모교장 공모 심사·선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가. 공모교장심사위원회[학교, 교육청], 공모교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시, 심사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역량강화를 위한 사전연수 교육을 반드시 실시
- 나. 심사 및 선정 과정에서 이의제기 등 심사·선정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확인한 후 부당함이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 교장공모 학교 지정 철회 및 연루자에 대한 행정조치, 징계 등 엄중 조치
- 다. 공모교장 심사·선정 절차가 부당하여 교육부장관이 임용제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장의 공석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학교의 교장 임용 방식을 교육공무원법 제13조에 따름
- 라. 심사 절차가 끝난 후 1차 및 2차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 공개
- 마. 교육청 심사 후 일정 기간을 이의제기 신청 기간으로 운영
 - 명확한 증거자료와 함께 접수된 사안은 즉시 조사 및 조치 예정
- 바. 공모 교장 지원자 또는 후보자가 공모 심사 전에 공모심사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행위를 무효화하고 교육감 추천 철회 또는 장관 임용 제청 거부할 수 있음
- 사.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 교류 임용되어야 할 사람이 공모교장을 희망하는 경우, 국립학교의 임용권자와 교육감이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함
- 아. **공모교장 지원서류 연구부정행위(표절 등) 검증 강화**

1) 근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7.17.시행]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 2) 지원자로부터 지원 서류에 연구부정행위(표절 등)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서와 연구부정행위(표절 등)로 판정 시 지원자격 박탈, 임용추천 및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음
- 3) 공모교장으로 재직 한 사람이 2023.3.1.자 공모교장 지원 시, 이전 공모교장에 지원할 당시 제출한 본인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운영계획서를 인용할 경우에도, 출처표시가 없다면 연구부정행위의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되며, 출처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면 지원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을 유의
- 4) 연구부정행위(표절 등)로 판정되는 경우 공모교장 자격 박탈, 임용추천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추후라도 징계 등 엄중 조치
 ※ 공고문에 반드시 연구부정행위(표절 등) 검증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 5) 공모교장 연구부정행위(표절 등) 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기구 : 도교육청에 5명 이내 외부전문가로 공모교장 연구부정행위(표절 등)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대상 :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운영계획서
 - ※ 시·도별로 DB화(전자화)하여 검증시스템 구축·운영('13. 12월~)
- 연구부정행위(표절 등) 심사 범위 : 2010.3.1. 공모 이후 전국에서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자 및 2023. 3. 1.자 교장공모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운영계획서
- 심사기간 : 1차 심사 전까지 완료
- 연구부정행위(표절 등)로 판정 시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함

VI 공모교장의 인사 관리 및 평가

1. 공모교장의 임용권자

공모교장의 임용권(공모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 제외)은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감에게 있음

2. 공모교장의 임기

가. 임용기간: 2023. 3. 1. ~ 2027. 2. 28. (4년 원칙, 일부 예외)

나. 공모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교장 1차 중임제한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3항)

다. 교장으로 근무 중인 자가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모교장 임용 이전의 교장 임기 잔여기간은 소멸됨

라. 공모교장은 임기 중 인사조치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할 수 없음

3. 공모교장의 임기 중 인사조치

가. 공모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하는 인사조치를 요청하거나, 임용권자 직권으로 본인의 소명 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할 수 있음

나. 공모교장이 임기 중 일신상의 사정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워 학교운영위원회에 “인사조치 심의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 임용권자에게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하는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다. 공모교장으로 임명된 자는 임기 기간 동안 다른 직위로 전직할 수 없음
(2021. 3. 1.부터 적용, 기존 공모교장 임용자 포함)
- 라. 공모교장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징계관련 규정을 적용함
- 마. 재임 중 면직된 교장에 대한 사후처리
 - 1) 당연퇴직(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직권면직, 명예퇴직, 징계 면직되는 경우 별도의 신분보장 조치는 없음
 - 2) 의원면직의 경우, “임기만료 후 사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
- 바. 교장의 궐위(재임 중 면직, 징계 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하여 공모제 적용 취소 조치
- 사. 공모교장 임용권자가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하는 인사조치(명예퇴직 포함)를 하였을 때는 교육부에 보고

4. 공모교장의 평가

- 가. 평가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공모교장
- 나. 평가는 해당 공모교장의 임기 중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나, 임기가 3년 미만으로 임용된 교장은 1회만 실시할 수 있음
- 다. 평가 관리기구
 - 1) 도교육청 공모교장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
 - 2) 평가 계획 및 운영, 평가단 구성, 관련 자료 수집, 최종 평가보고서 작성 등의 역할을 수행
- 라. 평가 내용은 직무수행 능력 및 성과 등을 평가함
 - 1) 지도력과 직무수행능력, 학교운영계획 달성도, 교육과정 및 평가, 학생생활 교육 및 활동 지원, 조직관리 및 지원, 학교 운영 관리 편성 및 운영, 학부모 및 대외협력 관계 지원, 전문성 신장 지원, 학교 구성원 만족도 조사 등 학교 운영 관련 실적 등
 - 2) 청렴도, 자질, 징계 여부 등 교장으로서 적격성 검증
- 마. 평가 방법
 - 1) 자기평가, 현장평가(방문 면담, 전화 상담 등), 성과평가

2) 적격성 검증은 감사담당부서 등 의견 조회 등을 통해 실시

바. 평가 결과 활용

1) 중간평가

▶ 교육청: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및 지원 자료로 활용

※ 평가결과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 등 인사조치

▶ 공모교장: 피드백을 통한 학교 개선 및 자기개발 자료로 활용

2) 최종평가

▶ 공모교장: 임기 만료 후 승진·중임·전직 등 인사에 적극 반영

사. 평가의 관대화 방지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 수립·시행

5. 임기 만료된 공모교장의 인사

가.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난 경우(공모교장 임기 만료 전에 직을 해제한 경우 포함) 공모교장에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여야 함. 다만, 공모교장 임용 당시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은 공모교장 평가결과 등에 따라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승진임용하거나,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음

☞ 교장중임을 마치고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후 정년 전에 교장 임기가 만료(공모교장 임기 만료 전에 직을 해제한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원로교사로 임용될 수 있음

나. 공모교장 임기가 끝난 경우, 당해 학교에 교장공모 지원은 불가하나 다른 학교 공모교장에는 지원 가능

VII 시행 일정

순	세부일정	기간	담당	비고
1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 확정	10.27.(목)	도교육청	
2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 및 신청 안내	10.28.(금)	도교육청	
3	·교장공모제 설명회 실시	10.31.(월)	도교육청	
4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11.8.(화)까지	학교	
5	·교장공모 신청	11.8.(화)	학교	
		11.9.(수)	교육(지원)청	
6	·교장공모 실시학교 선정 및 통보	11.14.(월)	도교육청	
7	·교장공모 실시학교(학교장, 담당자,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및 해당 교육지원청(과장, 담당자) 담당자 연수 (도교육청 2층 강당 14:00~)	11.15.(화)	도교육청	
8	·교장공모 공고	11.16.(수)~11.22.(화)	학교 교육(지원)청	
9	·교장공모 지원자 접수	11.16.(수)~11.22.(화)	학교	
10	·교장공모 지원자 현황 보고	11.23.(수) 15:00	학교	
		11.23.(수) 17:00	교육지원청	
11	·교장공모 재공고	11.23.(수)~11.25.(금)	학교 교육(지원)청	
12	·재공고에 따른 교장공모 지원자 접수	11.23.(수)~11.25.(금)	학교	
13	·교장공모 지원자 결격사유 조회	11.23.(수)~11.28.(월)	도교육청	
14	·교장공모 지원자 현황, 지원자 제출서류 파일 (자기소개서, 학교운영계획서), 1차 심사 계획 보고	11.28.(월)	학교 교육지원청	
15	·1차 심사 계획 지원자에게 안내	11.28.(월)	학교 교육지원청	
16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관리위원 구성 및 연수	11.28.(월)~11.30.(수)	학교	
17	·자기소개서, 학교운영계획서 탑재(익명화) (다만, 학교운영계획서는 1차 심사 당일 원본으로 교체하여 2차 심사일까지 공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2차 심사일까지	학교 교육(지원)청	
18	·지원자 자기소개서, 학교운영계획서의 연구부정 행위(표절 등) 및 부적격 유무 검증	11.29.(화)~12.1.(목)	도교육청	
19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 통보	12.2.(금)	도교육청	
20	·1차 심사(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실시	12.6.(화)~12.8.(목)	학교	
21	·2차 심사위원(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교육(지원)청	
22	·1차 심사 결과 3배수 추천	12.9.(금)	학교	
23	·2차 심사 계획 보고 및 지원자에게 안내	12.9.(금)	학교 교육(지원)청	
24	·2차 심사(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실시	12.12.(월)~12.14.(수)	교육(지원)청	
25	·1차, 2차 심사 결과 이의제기 신청기간	12.15.(목)~12.16.(금)	교육(지원)청	
26	·2차 심사 결과 이의 확인 현장실사	12.19.(월)~12.21.(수)		
27	·2차 심사 결과 3배수 추천	12.23.(금)	교육(지원)청	
28	·임용예정자 명단 보고(교육부)	2023.1.	도교육청	
29	·교육감 임용 추천 → 교육부장관 제청	1월중	도교육청	